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II. 검토의견

1. 스포츠안전재단의 수익사업 관련(안 제13조의4)

개정안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자문, 안전관리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안 제13조의4제6항은 안전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의 범위와 그 관리·감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안전재단은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안 제13조의4제1항)으로, 정부가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4제5항).

그러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②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¹⁾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 ⑤ (생략)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1)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사단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제3항).

⑥ 안전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생략)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 ⑦ (개정안과 같음)
--	---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운영·지원 관련(안 제22조)

안 제22조제1항제10호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의 목적사업에 안전재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9, 이하 “본회의 계류안건”)2)에서도 제22조제1항제10호를 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사업에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음.

이에 본회의 계류안건이 먼저 시행(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되어 새로운 개정안의 시행 당시 현행 조문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개정안이 본회의 계류안건의 내용[새로운 개정안의 현행(예정) 조문]을 반영하도록 하고, 각 안건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개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하였음.

2)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3. 18.)에서 수정의결되어 본회의에 계류중임.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본회의 계류)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2조(기금의 사 용 등) ① (생 략) 1. ~ 9. (생 략) 10. 대한체육회, 지 방 체 육 회, 대한장애인체 육회, 지방장 애 인 체 육 회,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생활 체육 관련 체 육단체와 체 육 과학 연구 기관, <u>스포츠</u> <u>윤리센터</u> 및 <u>체육인재육</u> <u>성</u> 관련 단 <u>체</u> 의 운영· 지원	제22조(기금의 사 용 등) ① (현행 과 같음) 1. ~ 9. (생 략) 10. ----- ----- ----- ----- ----- ----- ----- ----- ----- <u>스포츠</u> <u>윤리센터</u> , 한 <u>국 대 학 스포</u> <u>츠협의회</u>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제22조(기금의 사 용 등) ① (현행 과 같음) 1. ~ 9. (생 략) 10. ----- ----- ----- ----- ----- ----- ----- ----- ----- <u>스포츠</u> <u>윤 리 센 터</u> , <u>체 육인재육</u> <u>성</u> 관련 단 <u>체</u> 및 <u>안전</u> <u>재단</u> 의 운영 · 지원	제22조(기금의 사 용 등) ① (개정 안과 같음) 1. ~ 9. (생 략) 10. 대한체육회, <u>지 방 체 육 회</u> , <u>대한장애인체</u> <u>육회</u> , <u>지방장</u> <u>애 인 체 육 회</u> , <u>한국도핑방지</u> <u>위원회</u> , <u>생활</u> <u>체육 관련 체</u> <u>육단체와 체</u> <u>육 과학 연구</u> <u>기관</u> , <u>스포츠</u> <u>윤리센터</u> , 한 <u>국 대 학 스포</u> <u>츠협의회</u> , <u>체</u> <u>육인재육성</u> <u>관련 단체</u> <u>및 안전재단</u> 의 운영·지 원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밖에 경미
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안 제13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1항제10호에 대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하여 종전의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을 법정법인화할 경우 상시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안전교육 확대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보조금 예산으로 법정법인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14조제7항에 대하여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은 현재 종목단체 지원 예산으로도 자체충당이 가능하고, “파트너 선수”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지원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